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상품 소개·판매 허용 >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91호)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35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오세회의원안】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최형두의원안】

I. 제안경위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3
1. 입법배경	3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할 수 있는 지역채널 운용의 근거 마련(안 제70조의3 또는 안 제70조)	7
3. 금지행위 및 제재규정, 과태료 규정(안 제85조의2제1항제7호, 제100조 제5항, 제108조제1항)	15

【오세회의원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4. 14.

다. 회 부 일 : 2025.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광고비 부담 등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지역 상권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소개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0조의3 신설 등)

【최형두의원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6. 13.

다. 회 부 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대면 소비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상권은 소비자 유입 감소와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규제 실증 특례를 시행 중이며, 지역상품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하였음. 지역채널이 지역상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주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70조제4항 단서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입법배경

☐ 실증특례 관련 경과

○ 현행법 제70조제4항¹⁾은 SO가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 등을 제작·편성·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으로, 방송 광고의 실질을 가지는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을 지역채널을 통해 운용할 수는 없음.

-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제를 두고 있으며,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의 경우 법 제9조제5항 단서²⁾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문편성을 하는 사업자(홈쇼핑PP)가 행하는 경우 방송광고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예외규정³⁾을 둠.

- 홈쇼핑PP에 대해서도 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별도의

1)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2)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73조(방송광고등)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심의규정(「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별도의 관리·감독 및 규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임.

- 그러나 2021년 6월 COVID-19로 인하여 지역경제 위축 대응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SO가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민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할 있도록 하는 방송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현재 법령정비시까지로 연장된 상태임.

<실증특례 주요내용 등>

주요 내용	○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시청자에게 맞춤형으로 홍보·판매 하는 방송 서비스
실증 범위	○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 촉진행사 기간에 한정하여 종합유선방송 지역채널 가입자를 대상으로 커머스 방송 서비스 제공
부가 조건	○ 다음의 부가조건 준수 필요 1.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사와 연계하여 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행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 2.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의 방송기간은 행사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주최·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전·후로 각각 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의 방송은 1일에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로 하되, 주시청시간대*에는 할 수 없다. * (평일) 오후 7시~오후 11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오후 11시 4.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수·축산인의 상품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상품 선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6.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의 방송내용물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7.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 방송화면의 상단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임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실증특례와 관계 없이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재허가·변경허가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법제화 추진 경과

- 실증특례 이후 과기정통부는 중소 케이블TV 지원을 위해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의 제도화를 추진해왔으며, 2024년 3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서도 중소·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제도화’ 추진이 포함되었음.
- 제도화 필요성으로 TV홈쇼핑 진입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농가, 영세기업의 상품의 판로개척이 가능하다는 점, 지역 특산물 판매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점, SO의 지역채널 커머스운영은 지역성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기여한다는 점 등이 제시됨.
- 이에 대해 홈쇼핑 업계와 SO 업계의 대립이 있었음.
- 홈쇼핑 업계는 정부규제 및 사업허가를 받아 홈쇼핑 채널 운영이 가능한데, SO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채로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TV홈쇼핑 시장의 포화상태로 시장 잠식의 우려가 있으며, 홈쇼핑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였음.
- SO 업계는 TV홈쇼핑 진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농가 등의 상품만 판매하는 지역 특화 서비스로 기존 홈쇼핑과 직접 경쟁은 아니고, 서비스 이용자 급감으로 매출절벽에 시달리는

SO에 대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TF를 구성하는 등 홈쇼핑 및 SO 관계자와의 협의를 지속하여, 2025년 4월 방송 송출시간과 횟수, 대상상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 상황임4).

<지역커머스 합의안>

◇ 대전제 : ①지역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 ②홈쇼핑에 입점하는 업체와 제품은 불가, ③상품 판매 전문 채널화 되면 안됨

구분	협의안	MSO	홈쇼핑
방송 기간	○ 대한민국 동행세일 ○ 국가·지자체 및 국가·지자체가 인정하는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	○	○
	○ 방송기간은 행사기간 이내로 함. 다만, 상품 소진 시까지 허용 (행사기간 전·후 각 7일 까지 연장 가능)	○	○
대상 상품	○ 70% 이상 소상공인 상품 편성(30%내 중소기업, 농수축산품)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이하 우선 고려 ○ 홈쇼핑과 동일 상품 취급 금지 ※ 동일 상품의 정의, 기간, 방법 등 추가 협의 필요 ○ 기준 미준수 시(이행 실적 점검) 시정명령	○	○
방송 시간	○ 1일 3시간 이내로 한정 ○ 주시청시간 방송 불가(평일 오후 7시~오후 11시 / 주말 오후 6시~오후 11시)	○	○
송출 지역	○ MSO 간 교환 송출 제한 * (2차 논의사항) 중소SO는 MSO 교차송출 또는 홈쇼핑과 협업 원함	○	○
방송 심의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방통위 결정사항 홈페이지 게시, 소비자에 통지(홈쇼핑사 동일)	○	○
품질 관리	○ 지역채널 커머스 상품 품질관리 방안 마련	○	○
상생 협력	○ 법 개정 후,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이 홈쇼핑과 상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위법령(고시)에 상생협력 조항 마련 - 기준 변경 시, 협의체에서 심의·의결 ○ 과기정통부(또는 중관소) 연 1회 점검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할 수 있는 지역 채널 운용의 근거 마련(안 제70조의3 또는 안 제70조)

가. 주요 내용

- 오세회의원안은 「방송법」(이하 “법”) 제70조의3, 최형두의원안은 법 제70조제4항단서 및 제10항을 신설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가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할 수 있는 지역채널(커머스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오세회의원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나 그 계열회사에 속하는 자의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70조의3 제1항 단서), 승인조건 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3항).
- 또한, 오세회의원안은 다른 SO의 방송구역 이외의 방송구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0조의3제2항), 지역상품의 범위·편성 기준 등은 과기정통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70조의3제4항).

<오세회의원안 제70조의3>

현 행	오세회의원안
<신 설>	제70조의3(채널의 구성과 운용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 상품(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내에 소재하는 「소상공 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개

현 행	오세희의원안
	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그 계열회사에 속하는 자가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지역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이외의 방송구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상품 및 지역상품의 생산·판매자의 범위,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관한 기준·방법과 제2항에 따른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이외의 방송구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송신 비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최형두의원안 제70조>

현 행	최형두의원안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③(생략) ④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放送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이하 “지역상품”이라 한다)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현 행	최형두의원안
⑤ ~ ⑨ (생 략) <신 설>	<u>제작·편성하여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다.</u>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4항 단서에 따른 지역상품의 생산·판매자의 범위와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검토 의견

-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SO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상품의 소개·판매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홈쇼핑 업계와 SO 업계 간 합의한 사항이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교환송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오세희의원안 제70조의3제2항은 SO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할 경우 해당 SO의 방송구역 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해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와 과기정통부는 전국규모 홈쇼핑 사업자의 출연으로 오해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지역 커머스 방송의 교환 송출을 금지하고 중소SO의 교환송출에 대해서만 추후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⁵⁾

<케이블TV-홈쇼핑 업계간 합의문 중 해당내용>

4) 송출 지역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다른 MSO 사이에서 지역커머스방송을 교환하여 송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 중소SO의 교환송출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 지역채널 커머스의 허용은 기존의 홈쇼핑 사업자와 SO 간의 영역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항으로, 민간 사업자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둘째, 상호출자제한집단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오세희의원안은 SO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그 계열회사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과기정통부장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고(안 제70조의3제1항 단서), 승인사항의 미이행·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안 제70조의3제3항), 시정명령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안 제108조제1항제7의4호).
-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와 위성방송사업자⁶⁾는 대기업 계열 SO에 대한 심사·승인에 대한 사항은 지역채널 커머스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저해할 수 있고, 제70조의3제4항을 통해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SO는 허가사업자로 재허가 시 부가조건 이행의무가 있으며 시정명령,

5) 이 경우 제70조의3제4항에서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 중 “제2항에 따른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이외의 방송구역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송신 비율”도 맞춰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6)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업계에서 HCN을 인수·운영하고 있음.

과태료 대상이므로 중복규제라는 의견임.

- 과기정통부는 안 제70조의3제1항의 단서에 대해, , 대상 SO가 전체의 50%이상(90개 중 54개)에 해당하므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의 경우 현재도 방송법에 따라 SO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⁷⁾ 특별히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존 시정명령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와 관련해 현행 체계를 살펴보면,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역채널 운용에 별도의 승인·허가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지역채널 운용 계획과 실적 등은 SO의 최초 허가 및 재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심사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 대형 SO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시정명령 등의 제재가 가능함. 즉, 추가적으로 시정명령 등의 근거를 두는 것은 입법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7) 제99조(시정명령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 다만, 대형 SO에 대해 추가적인 심사·승인을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이며, 이를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최형두의원안은 오세희의원안과 달리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찬성 측은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 및 시장질서의 유지 측면의 관점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맥락을 같이할 것으로 보임. 대형 SO가 커머스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기존 홈쇼핑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형평성을 위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고, 홈쇼핑은 상품품질 관리, 소비자 분쟁 해결 등과 관련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SO가 이에 상응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었는지 정부가 사전에 심사·승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임.
- 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반대의견 제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며, 앞서 과기정통부나 케이블TV협회 등의 의견과 맥락을 같이함. 지역채널 커머스의 핵심 목표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형 SO일수록 자본과 기술력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어, 이들에게 추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또한 지역채널 커머스와 기존 홈쇼핑이 취급하는 상품이 달라 직접적인 경쟁 시장이 아니고,

제작·편성 조건에 대한 고시 등 하위규정을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대형 SO에만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임.

<SO 사업자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사업자		점유율(6개월 평균)			
		21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23년 상반기	24년 상반기
SO (14개)	LG헬로비전	10.85	10.40	10.07	9.83
	SK브로드밴드	8.26	7.91	7.74	7.78
	딜라이브	5.71	5.57	5.51	5.36
	CMB	4.26	4.02	3.88	3.79
	HCN	3.63	3.53	3.51	3.48
	개별SO(9개사)	4.44	4.19	4.04	3.96
	SO 총계	37.16	35.62	34.75	34.19

※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의미함.

※ 개별SO(9개사): JCN울산중앙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금강방송, 남인천방송, CCS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KCTV광주방송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셋째, 법체계상 관련된 문구 등의 수정임.

- 현행법은 지역채널의 근거를 제70조제4항⁸⁾에 두고 있는데, 오세희의원안 제70조의3제1항은 동조와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존 지역채널과 별도로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를 위한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8)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향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있음. 이에 대해서는 “~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제70조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추가로 오세희의원안은 지역상품을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내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구역 내”로 법률에서 범위를 한정하기보다는 사업자 간 협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집행의 유연성 측면이나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됨.⁹⁾¹⁰⁾
- 최형두의원안은 제70조의제4항 단서를 신설하는 식으로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문제는 없지만, 단서는 뒤 문장이 앞 문장의 예외를 규정할 때 쓰는 것이고, 개정안은 뒤 문장이 앞 문장을 보충하는 관계로 보이므로, 단서(“다만, ~”) 보다는 후단(“이 경우 ~”)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9) 과기정통부도 같은 의견임.

10)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오세희의원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오세희의원안	수 정 의 견
제70조의3(채널의 구성과 운용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상품(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내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70조의3(채널의 구성과 운용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상품(「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제70조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다. (단서 생략)

3. 금지행위 및 제재규정, 과태료 규정(안 제85조의2제1항제7호, 제100조제5항, 제108조제1항)

가. 주요 내용

- 오세회의원안 및 최형두의원안 제85조의2, 제100조는 홈쇼핑 방송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지역 커머스 방송을 하는 SO에 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안 제85조의2제1항제7호는 SO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 안 제100조제5항은 SO가 방통위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의 홈페이지 게시, 소비자 통지,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함.
- 추가로, 오세회의원안 제108조제1항은 제70조의제3항에 따른 과기정통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 행	오세회의원안	최형두의원안
제85조의2(금지 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	제85조의2(금지 행위) ① - ----- ----- ----- ----- ----- ----- ----- -----	제85조의2(금지 행위) ① - ----- ----- ----- ----- ----- ----- ----- -----

현행	오세희의원안	최형두의원안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u>방송채널사용사업자</u>가 <u>납품업자</u>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생략) ② ~ ⑥ (생략) 第100條 제33조 제1항 ~ 제4항 (생략)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u>방송채널사용사업자</u>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u>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u>----- ----- ----- -----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100條 제33조 제1항 ~ 제4항 (현행과 같음) ⑤ ----- ----- --<u>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u>-----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u>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제70조의4항 단서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u>----- ----- ----- -----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100條 제33조 제1항 ~ 제4항 (현행과 같음) ⑤ ----- ----- --<u>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u>----- ----- ----- ----- -----

현행	오세희의원안	최형두의원안
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 ----- -----.	----- ----- ----- ----- ----- ----- ----- -----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 -----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 ----- ----- ----- -----.	
1. ~ 7의3. (생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신설>	7의4. 제70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 28. (생략)	8. ~ 2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규정 관련(안 제85조의2, 안 제100조)

- 홈쇼핑방송사업자는 현행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방통위의 시정조치(법 제85조의2제2항)나, 과징금 부과(법 제85조의2제3항)의 대상이 되며,¹¹⁾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법 제100조제5항¹²⁾)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11)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등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방송사업자등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2) 제100조(제재조치등)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운영하는 SO의 경우에도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 금지나 심의규정 위반시 소비자통지 등의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SO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오세희의원안은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안 제70조의3제1항에서의 수정의견과 같이, 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채널 외에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이 별개로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므로,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송신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는 식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보임.
- 추가로, 현행법 제73조제3항은 홈쇼핑 방송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홈쇼핑 방송은 방송광고와는 다른 심의규정을 적용하는 등 규제체제가 다른 상황임.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은 홈쇼핑과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지역채널커머스 방송도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조문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도 커머스방송 허용은 지역채널·홈쇼핑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개정안의 내

용대로면 커머스방송은 방송광고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방통위 소관이고, 홈쇼핑에만 방송광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을 방송광고 예외로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현 행	수 정 의 건
제73조(방송광고등) ③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u>방송의 경우</u> 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73조(방송광고등) ③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u>방송과 제70조의3제1항(오세희의원안) or 제70조제4항 후단(최형두의원안)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지역채널에서 송신하는 경우에는</u>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 과태료 규정 관련(오세희의원안 제108조)

- 오세희의원안 제108조제1항제7의4호는 상호출자제한집단 등이 과기정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 오세희의원안은 SO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그 계열회사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과기정통부장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고(안 제70조의3제1항 단서), 승인사항의 미이행·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안 제70조의3제3항), 시

정명령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08조제1항제7의4호).

-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와 위성방송사업자¹³⁾, 과기정통부는 현재도 방송법 제99조¹⁴⁾에 따라 SO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과태료 규정의 경우 앞서 대형 SO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승인 규정과 시정명령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와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다하더라도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226

13)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업계에서 HCN을 인수·운영하고 있음.

14) 제99조(시정명령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합 의 문

케이블TV 사업자, TV홈쇼핑 사업자 및 데이터홈쇼핑 사업자(이하 ‘홈쇼핑사업자’라 한다.)는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이하 ‘지역커머스방송’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기본 원칙

케이블TV 사업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커머스방송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지역커머스방송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금지하며, 케이블TV 사업자는 홈쇼핑사업자가 소개 또는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역커머스방송에서 소개 또는 판매할 수 없다.

2. 실행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케이블TV 사업자 및 홈쇼핑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칭)지역커머스방송 운영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실무협의체는 홈쇼핑채널에서 소개 또는 판매 중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지역커머스방송에서 소개 또는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대상 상품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3. 세부 기준

1) 방송 기간

케이블TV 사업자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및 국가·지자체 및 국가·지자체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기간에 한하여 지역커머스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사 기간 내 상품이 소진되기 어렵거나 소진되지 않았을 경우 케이블TV 사업자는 행사 기간 전·후로 최대 7일까지 연장하여 지역커머스방송을 할 수 있다.

2) 대상 상품

(1) 케이블TV 사업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연도별 전체 지역커머스방송 시간 중 70% 이상을 소상공인 상품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연도별 전체 지역커머스방송 시간 중 30%까지 중소기업 상품 및 농수축임산물 상품으로 편성한다.

- (2) 케이블TV 사업자는 소상공인 상품을 지역커머스방송에 편성하기 위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기업을 우선 고려한다.
- (3) 실무협의체는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역커머스방송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케이블TV 사업자가 세부 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방송 시간

- (1) 지역커머스방송은 1일 최대 3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 (2) 주 시청 시간대(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주말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에는 지역커머스방송을 금지한다.

4) 송출 지역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다른 MSO 사이에서 지역커머스방송을 교환하여 송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 중소SO의 교환송출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5) 방송심의 및 품질관리

- (1) 케이블TV 사업자는 방송심의 및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한다.
- (2) 케이블TV 사업자는 지역커머스방송의 상품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다.

6) 상생협력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커머스방송에 관한 방송법 개정 이후 지역커머스방송이 홈쇼핑과 상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통해 그 하위법령 및 고시에 상생협력 조항을 마련한다.
- (2) 지역커머스방송에 관한 세부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

케이블TV 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는 이 합의문을 통해 상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회원사가 본 합의의 당사자로서 상호 협력하여 이를 추진할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각 협회는 회원사를 대표하여 합의서 3부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한다.